

의안번호	2209617
의 퇴 인	김윤의원
회 답 일	2025. 4. 30.
추계번호	25D21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,200만원, 2030년 4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3,700만원(연평균 3억 8,7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(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)	372	380	387	395	403	1,937	387

- 주: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2.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(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3.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유사사례의 사업 총액을 참고하고 추계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5조의3 신설(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66조제3항제9호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의 치료 및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1조의3제1항 신설(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자등의 신체·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(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·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74조의6 신설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력 확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도우미 등 지원인력을 사전에 지정·운영하고 대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5조의3 신설(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)	X	재난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 항목, 항목별 건수 및 평균 비용,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2	안 제66조제3항제9호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	X	현행 재난지원금에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간병 등의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71조의3제1항 신설(재난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)	—	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매년 재난 피해자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4	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(재난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)	O	—
5	안 제74조의6 신설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력 확보)	X	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도우미 인원,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유사한 사업의 총액을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기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예산 편성 및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이고 유사사례인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영향을 추적조사하는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
 - 환경부의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-1에 따르면,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(R&D)의 환경건강연구부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영향을 추적조사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
 -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, 환경건강연구사업은 최근 7년(2016~2023년) 동안 평균 135억 9,400만원이 편성되었고, 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련된 연구사업은 2023년 기준 3억 5,000만원 편성
 - 본 추계에서는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,200만원, 2030년 4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3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 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유사사례인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참고하면, 장기추적조사 사업비는 2023년 기준 3억 5,0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2]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	372	380	387	395	403	1,937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를 유사사례의 사업비 총액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